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수 산 업 협 동 조 합 의 구 조 개 선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7039호, '20.2.18 공포, '20.8.19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기시정조치 변경에 따른 조치(안 제2조의2 신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적기시정조치 변경에 따른 조치 내용으로 관리기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의 경영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경영진단을 하도록 조치, 적기시정조치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 자금의 회수 등의 내용으로 규정함.

나.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안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및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고,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원직에서 면직 또는 해촉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의 감면(안 제13조의2 신설)

관리기관은 직전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설정된 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적기시정조치 변경에 따른 조치) 법 제4조의3 각호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조합의 경영상태 조사 또는 경영진단을 하도록 조치
2. 적기시정조치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3. 적기시정조치 조합에 대한 지원 자금의 회수
4. 그 밖에 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4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④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한 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합,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⑤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한 자는 위원

이 제4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원직에서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보험료의 감면) ① 관리기관은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법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결정”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4조”를 “제4조의2”로 한다.

1의2.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에 따른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관리 및 지정 해제

제20조제1항제1호 중 “결정”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조제1항제4호”를 “법 제4조의2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4조제1항제6호”를 “법 제4조의2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결정”을 “지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을 말한다.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적기시정조치 변경에 따른 조치) 법 제4조의3 각호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조합의 경영상태 조사 또는 경영진단을 하도록 조치 2. 적기시정조치 조합에 대한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신설>

자금지원 중단
 3. 적기시정조치 조합에 대한
지원 자금의 회수
 4. 그 밖에 적기시정조치의 변
경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기금관
리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
(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합,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
속되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

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⑤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한 자는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원직에서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⑧ ----- 제7항까지-----

위원회에서 정한다.

<신 설>

-----.

제13조의2(보험료의 감면) ① 관
리기관은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법 제29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
을 포함한다. 이하 “목표규모”
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
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
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
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29조의2제4
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
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
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
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
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
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
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

제19조(권한의 위탁) 법 제3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기 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 우려조합의 결정

<신 설>

2. 부실우려조합과 그 임원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5조 및 이 영 제1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

한다.

제19조(권한의 위탁) -----

-----.

1. -----
----- 지정

1의2.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에 따른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관리 및 지정 해제

2. -----
----- 제4조의2 -----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1. -----

조합의 <u>결정</u> 에 관한 사무	----- <u>지정</u> -----
2. <u>법 제4조제1항제4호</u> , 제10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2. <u>법 제4조의2제1항제4호</u> ----- ----- ----- ----- -----
3. <u>법 제4조제1항제6호</u> 에 따른 합병,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계약이전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무	3. <u>법 제4조의2제1항제6호</u> ----- ----- ----- -----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중앙회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경영상태 실사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삭제>
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④ ----- ----- ----- -----

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
1. 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 조합의 <u>결정</u> 을 위한 기금관리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무	1. ----- ----- ----- <u>지정</u> ----- -----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429